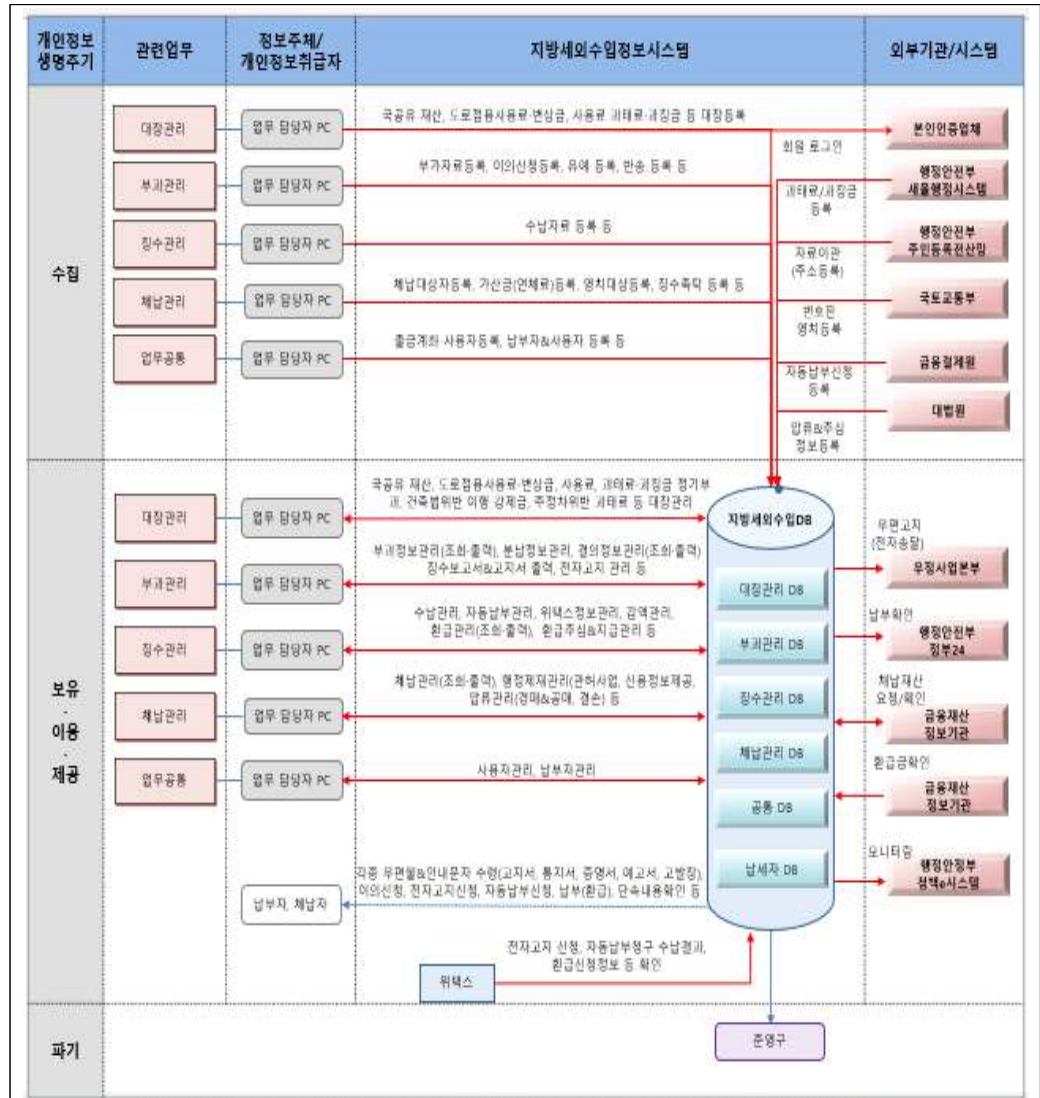

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공공기관 명		광주광역시				
평가기관		(주)씨에이에스	평가 기간	2026.05.04 ~ 2026.05.29	평가 예산	☐ 1천만원 미만 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☒ 1억원 이상
평가 대상 시스템 개 요	시스템명	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			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	2026. 1. ~ 2026. 12
	추진개요 및 목적	-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·징수·채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-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-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				
	추진성격	대상여부	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		추진예산	102,650,562천원 (VAT 별도)
		추진주체	행정안전부			
		추진근거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)		추진유형	☐ 신규 구축 ☐ 변경(고도화) ☒ 운영
		신기술 유형	-			
주요내용	-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-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채납관리 등 내·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, SW 등 변경사항 반영 -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,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 - 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-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·제도 개정에 따른 DB, SW, 코드 변경 적용 -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인프라(HW·상용SW) 증설 -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 -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-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, 현장방문, 사용자 교육, 자치단체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 - 장애예방 및 대응, 시스템 연계,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 -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등					
운용체계 변경내용	해당하지 않음					

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	파일명	정보주체 수	개인정보 항목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(세외수입) 감액관리	3,579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	세외수입 감액관리
	(세외수입) 결손관리	5,739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	세외수입 결손관리
	(세외수입) 과오납관리	1,222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예금주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명)	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행정안전부(청백e)	세외수입 과오납관리
	(세외수입) 부과관리	200,101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국토교통부	세외수입 부과관리
	(세외수입) 수납관리	184,934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금융결제원	세외수입 수납처리
	(세외수입) 압류관리	76,652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	금융결제원, 여신금융협회, 건설공제조합, 대법원, PG사(VAN)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세청, 관세청, 한국신용정보원	세외수입 압류관리
	(세외수입) 체납관리	97,497	이름, 집주소, 핸드폰, E-Mail, 직장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서울행정시스템	세외수입 체납관리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	1. 개인정보 처리 흐름 -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, 징수, 수납,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 - 광주광역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존기간 '준영구'로 보존하여야 함.			

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

영
향
평
가
기
준

평가기준
변경사항
및 사유

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 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
-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은 2025년 6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평가한 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함(4개 평가분야 10개 항목)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22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" 에서 제시한 "자치단체 점검내용"을 포함하여 평가함.
 - 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의 13개 항목
 - 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16개 항목
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

	주요 평가기준	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 보호법령”을 반영 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을 반영 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 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
	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『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20조(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 무의 정보화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『자동차관리법』 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(고유식별정보 의 처리), 『국유재산법』 제32조(사용료),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 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22조(사용료), 제81조(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7 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5년, 10년 등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
위험 요인 에대 한개 선조 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-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(2.3.2) :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통 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-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하는 내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공개 (3.1.9) :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- 개인정보 보유기간 재설정 (3.2.1) :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'준영구'로 정의 - 개인정보처리 재위탁업체 공개 (3.4.1) : 개인정보처리를 재위탁한 내용에 대하여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공개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해당없음
	평가결과	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4개 평가분야 10개 항목은 2025년 6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평가한 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함. 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을 부분 이행 하고 있음 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,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. 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8 개 항목을 제외하고 19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.

	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
--	---